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18 선고 2019가단5139159 판결 [부당이득금등 반환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0. 4. 20.

판결 선고2020. 5. 18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은 104,618,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. 9. 3.부터 2020. 4. 1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4,372,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. 9. 3.부터 2020. 1. 3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가. 피고 B에 대한 청구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C에 대한 청구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항운서

별지